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5843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9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584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나399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A 담당변호사 안BA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C 담당변호사 임BB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29. 선고 2003나39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우D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DB에게 그 판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우DB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한 2000. 12.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기한이 도래하게 되자 우DB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는 보증원금을 2,430만 원, 보증기한을 2001. 12. 29.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2001. 1. 6. 이 사건 2차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원금 2,7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이 사건 2차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2001. 6. 29.로 연장하였다가, 2001. 6. 29. 대출기한을 보증기한과 같은 2001. 12. 29.로 다시 연장한 사실, 그 후 우DB이 2002. 1. 30. 피고에게 보증금액 2,160만 원, 보증기한 2002. 12. 29.로 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변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2. 1. 30. 대출원금 중 300만 원을 회수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에 따라 2002. 1. 31. 나머지 대출원금 2,400만 원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2002. 12. 29.로 연장한 사실, 그 후 우D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02. 9. 9. 당시까지의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변경된 보증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보증서에 첨부된 신DA약관(이하 '신DA약관'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은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피고가 따로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아니하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보증서의 보증기한은 신DA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1. 6. 29.로 단축되었고, 원고는 신DA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출연장 기한이 만료되자 보증조건변경 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2. 29.로 2차 대출연장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2차 보증서의 보증기한인 2001. 12. 29.까지 피고의 보증책임이 유효하게 존속한 것으로 알고 2002. 12. 29.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1차

대출연장이 이 사건 2차 보증서의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2001. 6. 29.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2002. 12. 29.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은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위 신용보증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또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우DB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업무 취급기준 중 조건변경업무 처리기준에는 주채무 관련 내용은 채권은행으로부터 전신에 의해 확인한 내용으로 취급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주채무의 기한연장에 따른 보증기한의 연장은 조건변경 품의를 생략하고(제9조),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없는 기한 연장은 고객팀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제15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우DB으로부터 주채무의 대출기한 및 보증기한이 모두 2001. 12. 29.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 내용'란에도 변경 전 보증기한이 2001. 12. 29.로 되어 있을 뿐 대출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고의 담당자에게 주채무의 대출기한 등에 관하여 전신확인을 거쳐 팀장 전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우DB으로부터 보증조건변경신청을 받고 조건변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보증조건변경 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